CERIK

제1021호 2025. 8. 29.

건설동향 BRIEFing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8)

- 이슈 ① 노란봉투법 본 회의 통과…후속 정비 완료 전까지 건설업 혼선 발생 불가피
- 이슈 ② 정부의 산업재해 전쟁 선포에 발맞춘 국회의 입법 러시…중층적 처벌 구조 강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 ('25.7.21.~'25.8.24.)

• 2024년 ENR 225대 '설계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ENR 225대 설계기업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약 78억 달러 증가한 2,268억 달러
- 지역별 1위는 유럽(271억 달러), 공종별 1위는 교통 부문(224억 달러)
- ESG, AI, 기후 회복력, 에너지 전환이 해외 설계시장 경쟁력의 핵심 요인

• 2024년 ENR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00억 달러대 회복
- 전체 해외 매출 중 공종별 비중 : 교통·건축·석유화학 65.3%(3,280억 달러), 지역별 비중 : 유럽·아시아·북미 67.8%(3,402억 달러)
- 주요 지역 성장과 주력 상품 위축이 공존, 해외건설시장 대응 전략 필요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8)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지난 약 1개월(2025.7.21.~2025.8.24.)간 국회에서는 총 746건의 법률안이 신규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 관련하여서는 평소의 약 2배에 달하는 55개 법안이 발의됨.

이달에는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발생 감축을 위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복수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중층적으로 산업안전 규제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됨과 더불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 11건까지 피규제자이자 피규율자인 건설산업의 입장에선 냉·온탕을 오가는 법안이 함께 발의된 점이 특징임.

또한, 최근 계속되는 도심 싱크홀 사고 등의 지하공간 및 지하구조물 붕괴 예방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및 관련 규제 강화의 입법 또한 두드러진 특성을 보임.

이슈 1 노란봉투법 본 회의 통과…후속 정비 완료 전까지 건설업 혼선 발생 불가피

◉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적으로 시도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1]」)이 지난 8월 24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임.

- 지난 21대 국회에서 11건이 발의되었던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8건이 발의(환경노동위원장 대안 포함)되어 이번에 본 회의 통과로 정부 이송되었으며, 정부 또한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와 달리 해당 법안에 찬성 뜻을 표명[2]하고 있어 개정이 명확함.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6개의 취지에 따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노란봉투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취지〉

구 분	개정 내용	개정 및 내용 변경 취지
①사용자 개념 확대 (제2조제2호)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 범위에 따라 원청도 사용자로 확대

1)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진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됨.
2) 대통령실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처지를 밝힘. 동아일보, 2025.8.25. 신문기사 참조.

구 분	개정 내용	개정 및 내용 변경 취지
②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삭제 (제2조제4호 라목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한 현행법 규정 삭제	플랫폼종사자 등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섭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해소
③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제5호)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과정 및 '임금, 근로 시간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추가	부당노동행위 철회, 임금 및 근로 시간 등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④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손해배상책임 면제 확대 (제3조제1항, 제2항, 제3조의2)	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 추가 ②「민법」 제761조제1항 손해배상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명시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 방지
⑤배상 의무자별 손배액 산정 (제3조제3항)	법원은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유지하되,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임금 수준 등에 따른 책임만큼만 배상
⑥신원보증인 면책 (제3조제5항)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	배상책임이 친인척 등 신원보증인에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

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 이번 「노란봉투법」은 기존 폐기 법안과 비교하여 ①사용자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②노동쟁의의 개념은 일부 축소하고, 그 대신 ③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책임제한·면제 규정을 추가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임. 즉, 최종적으로 기존 법률에 비해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3)]

◉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각칙이 아닌 총칙에서만 개정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규율 대상별·상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권조항 마련을 통한 하위법령에 위임치 않은 획일적 조항 마련에 따라 향후 여러 쟁점이 예상됨.

- 대표적으로 기존 근로계약 당사자로 국한하였던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으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임. 특히 원·하청 교섭권과 관련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함.

- 교섭 의제 범위와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여러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명백한 근로조건 변경 경우를 벗어나 교섭 의제 범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며, 원·하

3)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주요 내용과 전망, 2025.7. 참조

청 모두 교섭 주체가 되면서 복수 노조를 포함하여 어떤 절차로 누구를 대표로 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임.[4)]

- 이 외에도 향후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이나 감면 여부 및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 또한 우려스러움.

◉ 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시행 준비기간(6개월)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나[5)], 해당 기간 다양한 산업별·상황별 특성이 반영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기간이 촉박한 점과 더불어 지침·매뉴얼의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합리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임.

◉ 하도급 거래 관계가 계약이행의 근간인 건설업의 경우 이번 「노란봉투법」에 따른 혼선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개정 법률이 전(全)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임에 반해 법 설계의 근간이 단일 대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조선업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과 생산구조가 상이한 건설업의 경우 실무상 여러 혼선 발생이 불가피함.

- (**사용자 범위 확대 관련**) 일례로 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원도급자는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해당 여부에 따라 성실 교섭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제2조제2호).

- 허나 건설공사 원·하도급 거래 관계 속에서 원도급자의 실질적 지배력 해당 여부는 타 산업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련 근로조건(안전시설 설치, 안전장구 지급, 휴게시설, 근로자 일탈행위에 따른 출입 배제 등)과 전체 공정계획에 연동된 근로시간[6)] 외 대다수의 사항은 교섭 의무 대상에 포함치 않음.

- 다만, 하도급 소속 근로자 및 노조의 경우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원도급자의 직접적 교섭 의무 발생 영역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도급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종사자 인식 명확화가 시급함.

-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 소속 근로자의 교섭 주체가 원도급자로 확대되었기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대신하여 근로조건의 변경 등을 정한 경우 실제 임금 등의 지급 주체인 하도급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원도급자가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변경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등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됨.

4) 중앙일보, "與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논란의 3대 쟁점 따져보니", 2025.8.24. 신문기사, 한겨레, "'노란봉투법' 정부 시행 지침에 노사 촉각…핵심 쟁점 3가지는", 2025.8.25. 신문기사 등 참조
5)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2025.8.24. 보도자료
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도급자만이 단독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하도급자 모두에게 중첩적 지배·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가 이루어졌기에(제2조제4호라목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지위가 인정됨.

- 허나, 관련 판례[7]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여전히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조합원 및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쟁의 발생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협약의 효력을 받는 조합원)이 포함된 경우에만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기업 노동조합과 교섭 의무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음.[8]

- 물론 건설업의 경우 해당 현장 근로자(건설기능인력)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상당수가 전국건설노조 및 전국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등 합법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하도급자에게 성실 교섭 의무가 부여될 것임.

- 허나, 통상 권역별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당해 현장에 운송하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원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권역별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고 이를 해당 권역 공사현장에 일괄 적용되는 점, 이와 유사하게 주요 건설근로자 임금의 경우 권역별 특정 공종 건설근로자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계(철콘연합회 등) 간 체결되고 이를 해당 권역 공사현장 노임에 일괄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해당 협의가 단위 사업장 교섭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쟁의 행위의 적법 여부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업장별 임금 등의 교섭 요구의 타당성 등에 있어 혼선 또한 고려 가능함.

-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 사용 기계장비(카고크레인 등)의 경우 또한 「노란봉투법」에 포섭되지 않으나, 이와 관계없이 관련 교섭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우려됨.

- (**손해배상 면제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과 달리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손해배상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기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이 예상됨.

- 즉, △(주체의 정당성)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고,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시기·수단의 정당성)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

7)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舊)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8)·9) 열린노무법인 의견서(노조법 개정안과 기업에 영향) 참조

해져야 하고,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하며, △(절대적 금지) 폭력과 파괴행위 등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만 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음.[9)]

-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고용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단체협약이 사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근무시간(현장 운영시간, 통상 7시~17시) 내 쟁의 활동은 배상책임에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통상 현장 발생 쟁의행위 대부분이 현장 출입금지(점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조합의 시설사용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면책 여부에 대해서도 혼선이 우려됨.

- 하지만 이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쟁의 활동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제한이라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쟁의의 원인이 사용자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한 개정 법(제3조제2항)과 더불어 정당하지 못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인정하면서 근로자별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한 점(제3조제3항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이 외에도 정당한 조합활동이 이루어져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돌관공사 수행 필요에 의한 추가 비용 발생, 발주자로부터 계약 해제·해지를 통보받은 원도급자의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게 법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나,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어 하도급도급 계약 위반(준공기일 위반 등)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청구 등이 가능하단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조합활동 과정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대신하여 교섭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원·하도급 간 분쟁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 또한 예상됨.[9)]

◉ **이뿐만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다음과 같은 건설산업 관련 제·규정 정비와 실무적 차원의 준비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전국노조에 의한 불가항력 포함 여부**) 현행 공공공사를 규율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공사 대표 도급계약 조건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하도급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불가항력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국 단위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파업(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무

9) 이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의 공기는 빠듯하게 체결된 경우이나, 하도급계약 공기에는 여유가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발생 또는 후행 하도급의 돌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쟁의 발생 원인의 하도급의 경우 계약 내용 준수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지체상금 청구 또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청구 등)가 불가능할 경우 등 여러 형태의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기한 파업 등)으로 인한 단위 현장의 운송 정지 및 근로자·건설기계 장비 휴무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의 경우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에 해당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음.

- 허나, 해외와 달리[10]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노동쟁의나 운송 중지 조치, 화물의 봉쇄 등에 따른 공사 현장의 일시 중지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경우가 제한적이기에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쟁의행위 증가 시 그 일방의 피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불가항력에 사유 명확화와 그 경우의 공기연장 방법과 계약금액 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해외 주요국의 건설공사 계약조건에서 구분하고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

불가항력 사유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FIDIC
자연적 사건 및 상황	신의 행위	△	△	◎	△	○
	홍 수	◎	◎	◎	◎	○
	태 풍(폭 풍)	◎	◎	○	◎	◎
	호 우	○	◎	○	△	○
	해 일	△	◎	○	△	○
	지 진	◎	◎	△	△	◎
	화 산	△	△	△	◎	◎
	산사태		◎	△	△	○
	낙 반		◎			
	번 개	○	△	○	△	○
	재 난	△	△	△	△	○
인위적 사건 및 상황	정부의 행위 / 공적의 행위		△	◎		
	전 쟁(교전상태 및 적의 침공)	◎	평화헌법 상 미고려 사항	△	◎	◎
	반 란	△		△	△	◎
	혁 명	△		△	△	◎
	권력찬탈 및 내란	△		△	△	◎
	내 전	△		△	◎	◎
	폭 발		△	△	△	◎
	수출입 통제		△	△	△	
	폭동, 난동	◎	◎	△	○	◎
	무질서 / 소요	△	◎	△	○	◎
	테 러	△		△	◎	◎
타인으로 인한 상황	타 계약자의 행위			◎		
	설계누락 및 삭제					
	파 업(노동쟁의)		△	◎	○	◎

10)대표적으로 美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불가항력 사유에 노동쟁의(strikes)와 운송 중지 조치, 화물의 봉쇄(freight embargoes)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다만, 계약의 이행불능은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로 인하여 시공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중임.
또한, 美 건축가협회(AIA)와 FIDIC의 표준공사계약조건에서도 노동쟁의를 불가항력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 중임.

불가항력 사유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FIDIC
	(자재 등의) 공장폐쇄		△	◎		
	자재조달 지연			◎		
기타 사건 및 상황	방사선오염과 누출	△	△		◎	◎
	항공기의 추락				◎	
	전염병	◎		◎	◎	
	격리지역		△	◎		
	화 재	◎	◎	◎	◎	

◎ : 명시적 규정 존재, ○ : 명시적 규정은 미존재하나 유사 규정으로 해석 가능한 상황, △ : 기타 규정으로 해석 가능한 상황

주 : 1)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미국의 경우 연방조달규정(FAR) 및 AIA Document-A201, 영국의 경우 공공공사계약일반조건, FIDIC의 경우 Redbook 기준

2) 조영준(1998), 건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조항의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제6호 통권 제116호의 내용을 기초로 현재 각국의 규정 현황에 맞게 수정

- (**하도급법 저촉 관련**)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라 원도급자의 경우 하도급 소속 근로자 등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업지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노조에 속한 근로자 등의 채용 또는 현장 투입 금지를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이나 입찰요건에 반영하거나, 자신의 협력사가 기존 하도급계약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차후 이루어지는 신규 하도급계약 시 해당 하도급자를 배제하는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 또한 증대하기에 이에 대한 혼선 또한 예상 가능함.

- 특히, 합법 쟁의행위 시에는 하도급자의 교체가 「노란봉투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 시에는 정상적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하도급자나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것이 「하도급법」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점[11]을 고려할 때 해당 쟁의행위가 합법 또는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원·하도급자 간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더욱이 「노란봉투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수권조항(위임조항)을 통해 개별 사항을 규정치 않고 있기에 이러한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사항**) 이 외에도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의 복잡함에 따라 다수 하도급자가 현장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하도급자에게 속한 복수 노조가 동시에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원도급자의 일괄 교섭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 및 그때의 처리 절차와 더불어 △총액계약(Lump-sum)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경우 노동쟁의 확대를 고려한 PF 및 도급총액에 얼마만큼 예비 비용(risk premium)을 반영할지 등 예상치 못한 여러 실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1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노란봉투법」은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전(全)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기에 동일 사업장 내 장기 하도급 또는 사내하청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향후 하도급 소속 근로자 등의 쟁의행위 회피를 위해 계약직 직접고용 등으로 회피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허나, 건설업의 경우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 산업으로서 다기화된 전문 영역으로 인한 하도급 거래 관계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 산업과 달리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산업에 미칠 영향이 일정 수준 대법원 판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매우 클 것이기에 산업별 특성을 상세히 고려하여 지침 및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이와 연관된 제도의 사전 정비와 더불어 상생의 표준 교섭사례 모델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충실히 구축되기를 희망함.

이슈 2 정부의 산업재해 전쟁 선포에 발맞춘 국회의 입법 러시…중층적 처벌 구조 강화

-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 근절을 위한 부처별 대응 방안 보고(국무회의, 7.29.) 이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 정책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예정임.

  - 이에 발표 전이기는 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브리핑한 핵심 내용만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건설사 영업정지 및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시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함과 더불어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처벌 강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12)]

  -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11151호) 도입을 통해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3% 이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망사고 감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층적 처벌 규정이 건설업 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입법부인 국회 또한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이달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산업안전 관련 복수의 법률을 대상으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수 발의함.

  - 정부는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비롯한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시함(의안번호 제11662호).

  -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767호)의 경우 현행법에

12) 대한경제, "[다음달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1) '연간 다수 사망' 땐 영업정지 요청" 2025.8.14. 신문기사 참조

따라 도입된 작업중지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①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는 ②근로자가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과 더불어 ③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 조치가 우선 조치되도록 규정함.

- 이뿐만이 아니라 ④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⑤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까지 종합적인 개정안을 발의함.

- 정청래 의원(대표발의)의 경우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처벌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규율한 것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안번호 제11839호)을 통해서도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 차규근 의원(대표발의)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유로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에 따른 임금 감소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936호)을 발의함.

- 황명선 의원(대표발의)의 경우 현행법상 산재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기존 손해배상책임 부여만으로는 제한적이란 입장 아래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명확화와 더불어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053호)을 제안함.

- 윤상현 의원(대표발의)은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대표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096호)을 발의함.

- 김정호 의원(대표발의)의 경우 최근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관계 부처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반드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제 합리화를 제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251호)을 발의함.

- 이 외에도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의무 반영과 관련된 입법(의

안번호 제12006호), 지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입법(제11970호) 등 특정 상황에서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한 입법 또한 발의된 상황임.

◉ 정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또한 동 시기 동일 목적을 위한 규제 강화·처벌 중심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산업 환경을 얼어붙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면 함.

◉ 특히 건설산업 내 산재 발생의 원인이 비단 규제와 처벌 규정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개별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성 중복적 규제와 처벌 강화가 아닌 근원적 원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 체질 개선에 보다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일례로 정부가 우수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건설안전 선진국[13]이나, 싱가포르의 건설안전 주요 규제와 처벌 규정을 보면, 우리보다 규제와 처벌 규정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단일 법률(WSH Act) 체계 내 강력한 벌점제(Demerit Point System, DPS) 운영에 따른 인력 채용 제한 등을 통한 사업 활동의 실질적 제약 처벌 규정을 근간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관련 법률과 이에 따른 중복적 규제, 처벌 규정보다 훨씬 규제 이해도와 순응도가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정면교사 삼아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와 국회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을 통한 건설안전 규율 외에도 추가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와 처벌을 중층적으로 신설한다는 점에서 건설안전 선진국과 그 접근 방향이 정반대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방향으로는 이미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일반법 외 추가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복수 법률을 통해 복잡하게 규율하고 있는 건설안전 체계의 특별법으로의 일원화를 우선 고려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증대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기에는 여러 난맥[14]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을 갖춘 법안의 마련을 시급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3) '24년 건설업 사고사망십만인율 기준 우리나라(15.7)는 싱가포르(3.7)의 약 4.2배에 달하는 실정

14) 대표적으로 ①법안의 취지와 달리 법 위반 시 시공사에게만 과도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건설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미약한 처벌 규정, ②통합발주 등을 고려치 않는 제한적 법 적용 범위, ③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의 구체성 부재, ④타 법과의 상충 사항 및 현실성이 결여된 획일적 건설사업 수행 절차(예를 들어 설계자가 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고려 등) 규정 등을 들 수 있음.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7.21.~'25.8.24.)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13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7.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방지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안 제34조제9항) ▪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11항)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중대재해 처벌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19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7.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 중이나, –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2조)
「주택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23호(임호선 의원 등 10인)] ('25.7.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 ▪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카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 반복 – (제안방향)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5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62호(정부 발의)]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 공개 강화 필요 – (제안방향) 국토교통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개정(안 제67조의2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66호(김미애 의원 등 10인)]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등을 적용하되, 노유자(老幼者) 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중 – 한편, 2018년부터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 2025년 6월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기준이 적용되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제1항 후단 등)
「상생 협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75호(박성민 의원 등 11인)]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1679호(김도읍 의원 등 13인)]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허나,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의 경우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 – (제안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행법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발맞추어 개정(안 별표 제220호 신설)
「정부 조직법」	• [의안번호: 제11680호(김도읍 의원 등 17인)]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감독, 수산업 육성·지원, 해운·항만·해사산업 육성·지원의 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명	주요 내용
	-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 식품,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 해양 관련 문화·레저·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안 제36조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1686호(위성곤 의원 등 12인)]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비용/시간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에 한계 봉착 - **(제안방향)**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 지원(안 제71조의3 신설)
「근로 기준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689호(천하람 의원 등 10인)] ('25.7.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한 바 있으나, -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짜 야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 ▪ 실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가 37.7%에 달하며, 심지어 2021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의 63.5%가 포괄임금제 적용 상황 ▪ 202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하여 상당수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 외에도 동일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근로자(57.0%)와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가장 많이 꼽음 - **(제안방향)**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안 제22조의2 신설 등)
「주택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1731호(이연희 의원 등 16인)] ('25.7.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공표 중이나, -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가 부재하여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88조의2제1항 신설) ▪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8조의2제2항 신설)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88조의2제4항 신설 등)
「지방 재정법」	• **[의안번호: 제11740호(장종태 의원 등 11인)] ('25.7.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 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 제10호 신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748호(박형수 의원 등 10인)] ('25.7.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간 연계·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운전", "안전점검·안전진단", "정비"를 엔지니어링 활동에 추가(안 제2조) ▪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안 제31조) ▪ 공제조합의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 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 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 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주택법」	• **[의안번호: 제11763호(김선교 의원 등 10인)] ('25.7.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법률명	주요 내용
	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제안방향)**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21조)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1767호(김정호 의원 등 11인)] ('25.7.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의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 ▪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 중지 이후에 작업 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제안방향)** 이에 근로자가 기계·설비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 개선 ▪ 근로자가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2조제1항) ▪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2조제5항 신설) ▪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의2 신설) ▪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68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68조)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771호(전진숙 의원 등 14인)] ('25.7.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에 개선 추진 – (제안방향)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정(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하천법」	• [의안번호: 제11776호(전진숙 의원 등 14인)] ('25.7.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2022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 중 ▪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 관리 수준이 미흡한 실정 ▪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하는 실정 – (제안방향)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임금채권 보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797호(조인철 의원 등 10인)] ('25.7.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 필요 – (제안방향)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안 제3조 및 제7조의3)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1800호(김기표 의원 등 11인)] ('25.7.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 2023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 –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이기에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실정 ▪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 – (제안방향)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안 제36조의3)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1839호(정청래 의원 등 12인)] ('25.7.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포스코 E&C 등의 반복적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 –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하며,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에 이와 관련한 개정 필요 – **(제안방향)**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개정(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조세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11861호(추경호 의원 등 16인)] ('25.7.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 – 허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 – **(제안방향)**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98조의9 등)
「새만금 특별법」	• **[의안번호: 제11875호(이원택 의원 등 10인)] ('25.7.3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 – 다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새만금사업의 용지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의2 신설)
「조세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11897호(추경호 의원 등 18인)] ('25.7.3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유도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되어 있는 상황 –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특례 연장 필요 – **(제안방향)**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1921호(민병덕 의원 등 10인)] ('25.8.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명	주요 내용
	– 허나,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위원장 대안)*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924호(환경노동위원장)] ('25.8.1. 위원장 대안, 본 회의(8.24.) 가결)** –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 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나,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이 외에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게 총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 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 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 –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법률명	주요 내용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안 제3조제2항 신설) ▪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안 제3조제5항 신설)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936호(차규근 의원 등 10인)] ('25.8.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2조)
「행정규제 기본법」	• **[의안번호: 제11944호(강준현 의원 등 13인)] ('25.8.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반복 –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기후변화 대응·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에 시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 –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킬 필요 ▪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 마련 필요 – **(제안방향)**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법률명	주요 내용
「조세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11950호(추경호 의원 등 15인)] ('25.8.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 – (제안방향)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77조의3)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1954호(황운하 의원 등 12인)] ('25.8.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중 – 이처럼 현행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 여건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 – (제안방향)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임을 명확화(안 제34조제3항 신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1970호(황운하 의원 등 10인)] ('25.8.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그런데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사업 공사 현장 또는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또한, 현행법은 법명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정의 규정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 – (제안방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명시(안 제2조제4호의2, 제3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의안번호: 제11971호(추경호 의원 등 15인)] ('25.8.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 위임 –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 제기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개정(안 제29조제3항 삭제)
「근로 기준법」	• **[의안번호: 제11989호(박홍배 의원 등 16인)] ('25.8.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 **(제안방향)**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 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 명확화(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
「근로감독 관법안」	• **[의안번호: 제11990호(박홍배 의원 등 15인)] ('25.8.5.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간접고용 등의 확산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상황 직면 –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근로감독 제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집행 기준에 대한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 ▪ 이로 인해 근로감독 행정은 지역과 업종별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고용 구조하에서 권리구제의 시기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후퇴하는 양상 –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체불임금 등 노동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하고, 현장 대응의 표준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유도 ▪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을 감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유지·보호하도록 하여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과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정기·수시·특별감독의 유형 구분 및 감독 결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신고사건의 관할, 조사절차, 회피·기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전담 조사 체계, 재신고 처리 절차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 근로감독관의 범죄인지 및 수사 절차, 검사의 지휘, 송치절차,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체계 등 수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비밀유지 의무 위반, 부당 처우, 출석 불응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89호)의 의결 전제

법률명	주요 내용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006호(전용기 의원 등 14인)] ('25.8.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 대두 – (제안방향)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 예방 유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2009호(조인철 의원 등 10인)] ('25.8.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추진 – (제안방향)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 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안 제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신설) ※ 이 법률안은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
「소음·진동 관리법」	• [의안번호: 제12010호(조인철 의원 등 11인)] ('25.8.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 중 – 허나,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오피스텔·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개정(안 제21조의2) ※ 이 법률안은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
「정보통신 공사업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042호(김성원 의원 등 10인)] ('25.8.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법률명	주요 내용
	–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 – **(제안방향)**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2053호(황명선 의원 등 10인)] ('25.8.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 발생 – **(제안방향)**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안 제166조의3 신설)
「조세특례 제한법」	• **[의안번호: 제12059호(황정아 의원 등 15인)] ('25.8.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최근 AI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제안방향)**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 유도(안 제10조 및 제2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082호(민형배 의원 등 11인)] ('25.8.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에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제안방향)**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안 제29조제1항)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096호(윤상현 의원 등 10인)] ('25.8.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중이나, – 지하주차장, 창고·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102호(최민희 의원 등 12인)] ('25.8.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 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 방호규정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제12108호(강승규 의원 등 10인)] ('25.8.12.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 – (제안방향)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 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 체계 마련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제5조) ▪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 또는 반복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천구간을 우선정비대상 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관리청이 우선정비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토록 규정(안 제7조)
「하도급법」	• [의안번호: 제12118호(황운하 의원 등 15인)] ('25.8.1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 –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 추진 – (제안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항) ※ 이 법률안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 전제

법률명	주요 내용
「공정 거래법」	• **[의안번호: 제12121호(황운하 의원 등 14인)] ('25.8.1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90조제3항에서 제124조에서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 –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 추진 – **(제안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안 제12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항) ※ 이 법률안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 전제
「하도급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2139호(김남근 의원 등 33인)] ('25.8.1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 ▪ 이런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 –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한 상황 ▪ 이런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 –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처럼 기술 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행위를 한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만 열람하여 판결 자료로 활용 가능(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 전문가 사실조사 이전 대기업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보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안 제35조의10) ▪ 자료의 내용이나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자, 장치 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진술이 필수적이나, 이를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법률명	주요 내용
	기에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를 도입(안 제35조의11)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 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와 당사자신문에서 위증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안 제29조 및 제30조의2)하고,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 신설(안 제30조의3제8항)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2153호(배준영 의원 등 10인)] ('25.8.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 –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 – **(제안방향)**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36조의5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2163호(추경호 의원 등 10인)] ('25.8.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 – 그러나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로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 – **(제안방향)**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96조 및 제9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2167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5.8.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인 상황 –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 **(제안방향)**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99조의4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2174호(서영교 의원 등 13인)] ('25.8.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규정 중 –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2025년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에 그치는 등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2200호(배준영 의원 등 10인)] ('25.8.1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 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 – **(제안방향)**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244호(신정훈 의원 등 12인)] ('25.8.1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종합 설계·감리업체가 소방 설계·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 존재 –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 – **(제안방향)**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안 제21조 및 제37조)
「행정규제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2251호(김정호 의원 등 11인)] ('25.8.1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 – **(제안방향)**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2258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5.8.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구법인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 2015년 8월 구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규율하도록 개정된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 허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분양 전환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치 않은 상황 ▪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를 전제로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 제기 ▪ 특히, 최근 건설 원자재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건설공사비용이 폭등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 시점과 비교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점 역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을 증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제안방향)**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출하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안정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3조제4항제4호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2291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5.8.2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된 상황 -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공급 감소가 예견된 상황 ▪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소형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 - **(제안방향)**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안 제2조제6호의2)

2024년 ENR 225대 설계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ESG, AI, 기후 회복력, 에너지 전환이 설계시장의 주요 동력 -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thsohn@cerik.re.kr)

2024년 ENR 225대 설계기업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약 78억 달러 증가한 2,268억 달러 기록

◉ 세계 설계기업의 국내와 해외를 합친 2024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하며 9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 ENR 225대 설계기업의 글로벌 매출은 2023년 2,190억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2,000억 달러 대를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폭은 둔화함.

〈그림 1〉 ENR 225대 설계기업 글로벌(국내+해외) 매출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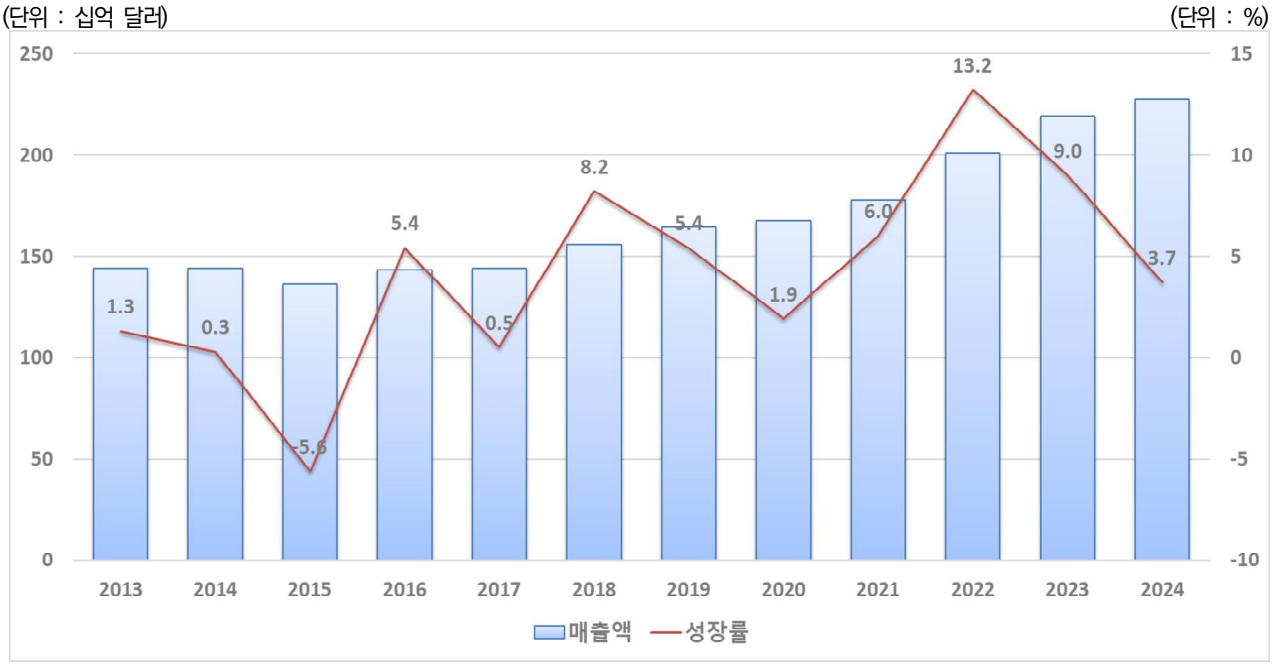

- 설계기업의 국내 매출 규모는 1,377억 달러로 2023년(1,361억 달러)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실적을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둔화됨.
- 2023년 829억 달러로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225대 설계기업의 해외 매출은 2024년에는 893억 달러를 기록함. 이와 같은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해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매출의 비중이 39.3%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그림 2〉 ENR 225대 설계기업 매출 및 성장률(좌)과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우)

(단위 : 십억 달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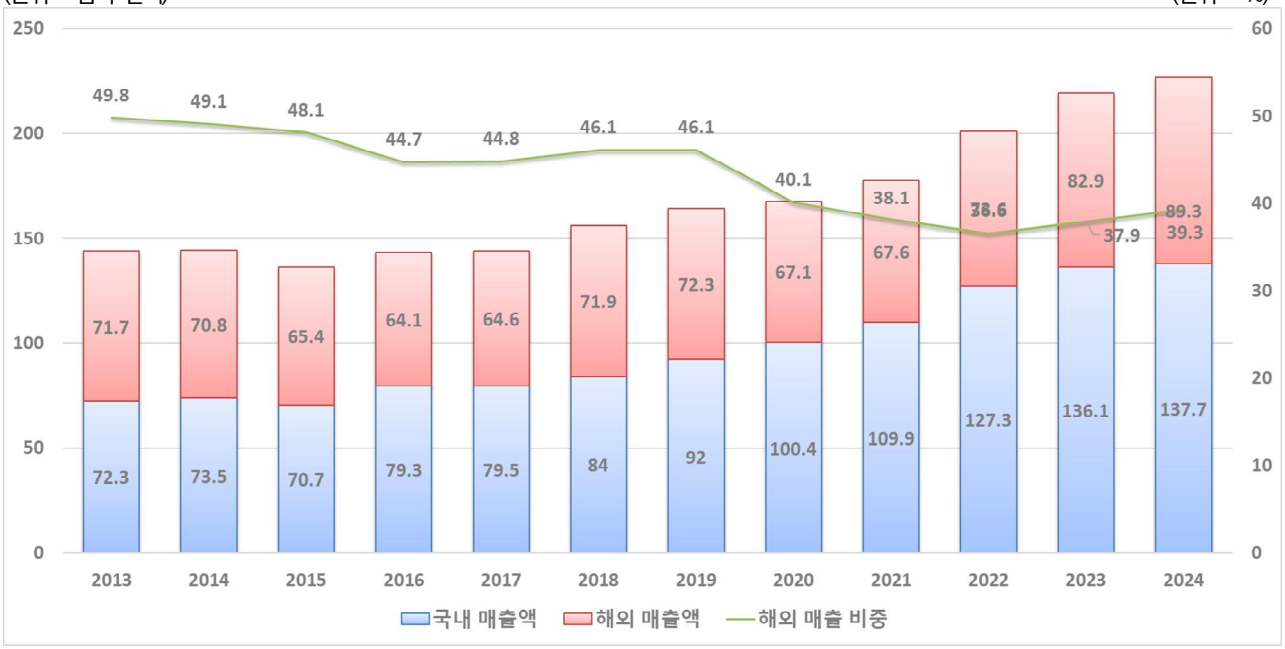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유럽이 271억 달러, 공종별로는 교통 부문이 224억 달러로 각각 1위 차지

◉ 지역별 해외 매출은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매출성장률로는 중동 지역이 전년 대비 30.2% 증가해 1위를 차지함.

- 해외 매출 규모별로 보면, 유럽 지역이 2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해 1위를 차지했으며, 북미 지역이 전년 대비 8.0% 증가한 244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함.
- 2023년에 전년 대비 29.7%가 늘어난 96억 달러의 매출로 2018년(101억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중동 지역은 2024년 125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대를 회복함.
- 2023년 전년 대비 4.8% 감소한 158억 달러로 감소세로 전환됐던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1억 달러로 반등에 성공함.

〈그림 3〉 ENR 225대 설계기업 지역별 해외 매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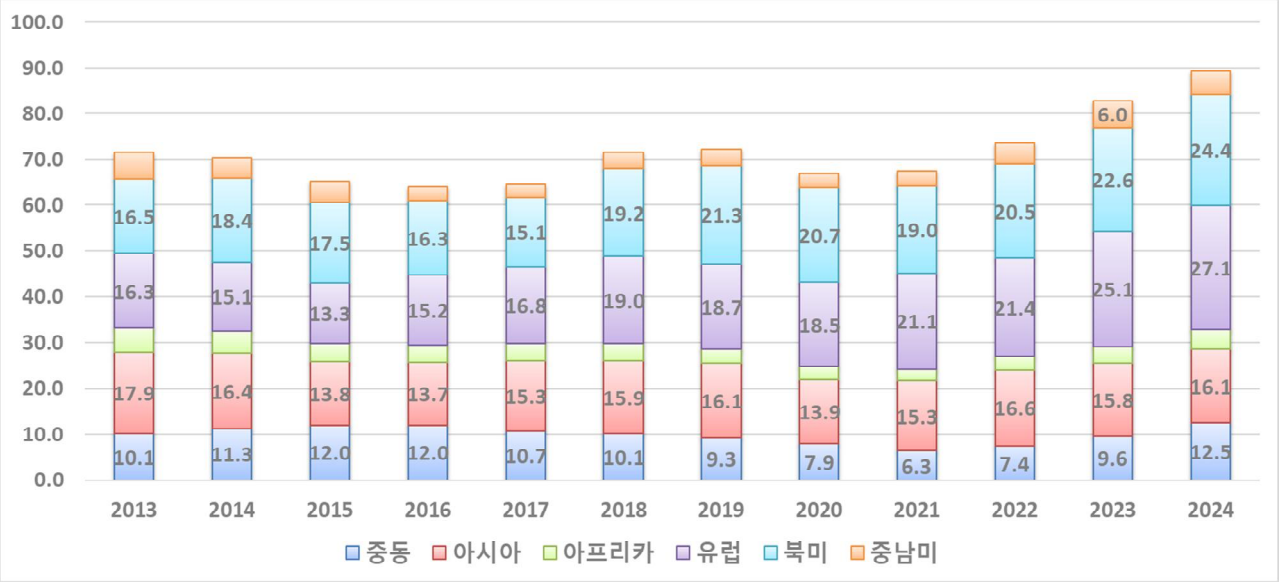

◉ 건축, 산업, 환경, 발전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공종은 발전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면서 118억 달러를 기록함.

- 반면에, 2023년 135억 달러를 기록했던 석유화학 부문은 전년 대비 20.8% 감소한 107억 달러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그림 4〉 ENR 225대 설계기업 공종별 해외 매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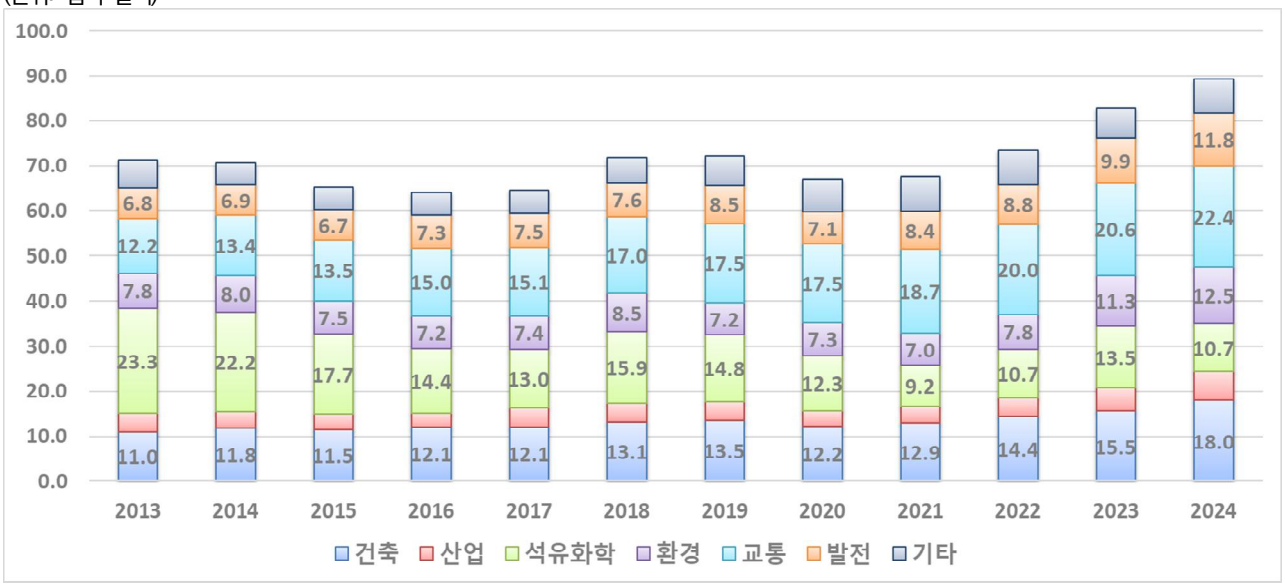

◉ 기업 국적별 해외 매출 규모는 미국이 194억 달러(21.8%)로 매출 점유율은 감소했으나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함. 이어 캐나다 193억 달러(21.7%), 호주 74억 달러(8.3%), 프랑스 62억 달러(7.0%), 네덜란드와 중국이 각각 59억 달러(6.6%)로 2~6위를 차지함.

- 2023년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2억 달러가 감소하며 4.9%의 점유율로 7위를 차지했던 영국은 2024년에도 33억 달러로 3.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12개 기업이 225대 기업 순위에 포함되며 전년 대비 0.4억 달러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0.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순위는 13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함.

〈표 1〉 ENR 225대 설계기업 중 해외 매출 상위 10개 기업과 국내기업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상위 10위 기업	WSP GLOBAL	WORLEY	ARCADIS	ATKINSREALIS	AECOM	STANTEC	JACOBS	FLUOR	SIDARA	TECHNIP ENERGIES
국내 기업	삼성E&A(48위)	도화(105위)	삼우(108위)	건화(113위)	KEPCO(125위)	유신(131위)	희림(149위)	GS건설(184위)	한국종합기술(190위)	제일(206위)

지속가능성(ESG), AI, 기후 회복력, 에너지 전환이 해외 설계시장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강화에 영향

◉ 공급망 차질, 자재비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프로젝트 재원 조달과 일정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평가되는 만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은 필수

- 진출 시장에서의 로컬 인재 양성과 지역 협력 강화 및 친환경 인증 확대가 해외 주요 선진기업의 전략으로 평가됨.
-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됨. 또한, 설계 효율, 인력 채용, 조달 및 프로젝트 기획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2024년 ENR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기업의 해외 매출은 증가한 반면, 국내 매출은 감소로 전환 -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thsohn@cerik.re.kr)

2024년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00억 달러대 회복

◉ 2023년 5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250대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0.5% 증가하며 5,021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 매출은 소폭 성장했지만, 250대 기업의 글로벌(해외+국내) 매출 규모는 2조 1,7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며. 국내 매출 규모는 1조 6,7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며 지난 2015년(1.3% 감소)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해외 매출이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1%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며, 2년 연속 20%대 비중을 유지함. 반면에, 국내 매출의 비중은 76.9%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함.
- ENR에 따르면 신규 수주 프로젝트 조사에 응답한 204개 기업 중 113개 기업은 신규 사업 수주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37개와 54개임. 250대 기업 중 64%가 2024년에 해외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61.4%는 글로벌(국내+해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ENR 250대 건설기업의 글로벌(국내+해외) 매출 및 해외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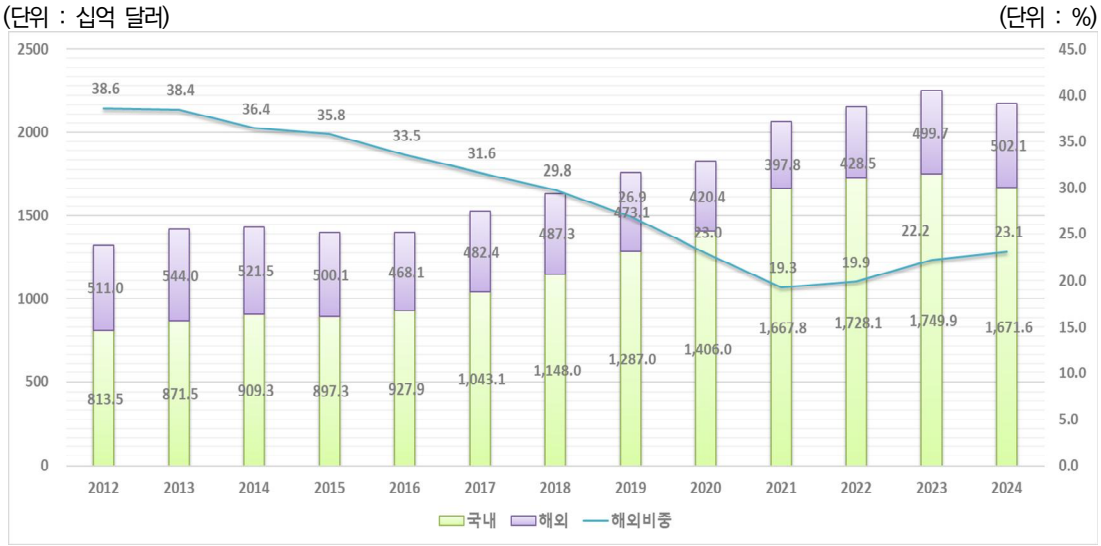

◉ 2023년 16.6%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해외 매출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증가폭은 대폭 둔화됨.

-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던 250대 기업의 국내 매출은 2024년 감소세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8.6%를 기록한 이후 성장 폭 축소가 뚜렷해지고 있음.

〈그림 2〉 ENR 250대 건설기업의 국내와 해외 매출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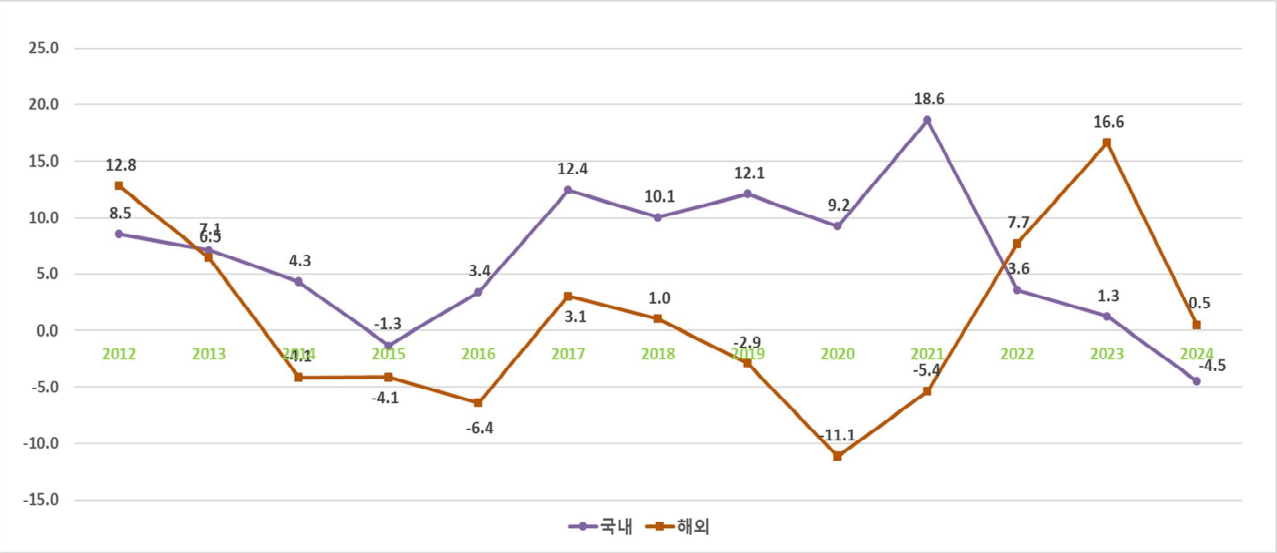

전체 해외 매출 중 공종별로는 교통, 건축, 석유화학 부문이 65.3%(3,280억 달러), 지역별로는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이 67.8%(3,402억 달러) 차지

◉ 2023년에 전년 대비 42.4%가 증가하며 811억 달러를 기록했던 석유화학 부문의 해외 매출은 이번 조사에서는 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감소함.

- 석유화학 부문과 더불어 제조 및 산업 분야도 5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감소한 518억 달러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됨.
- 반면에, 건축 부문은 1,0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를 회복함. 교통 부문은 전년과 유사한 1,5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주의 30.9%를 차지함.
- 또한, 상하수도 및 폐기물 등 환경 부문도 전년 대비 14.3%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에서 5%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3〉 공종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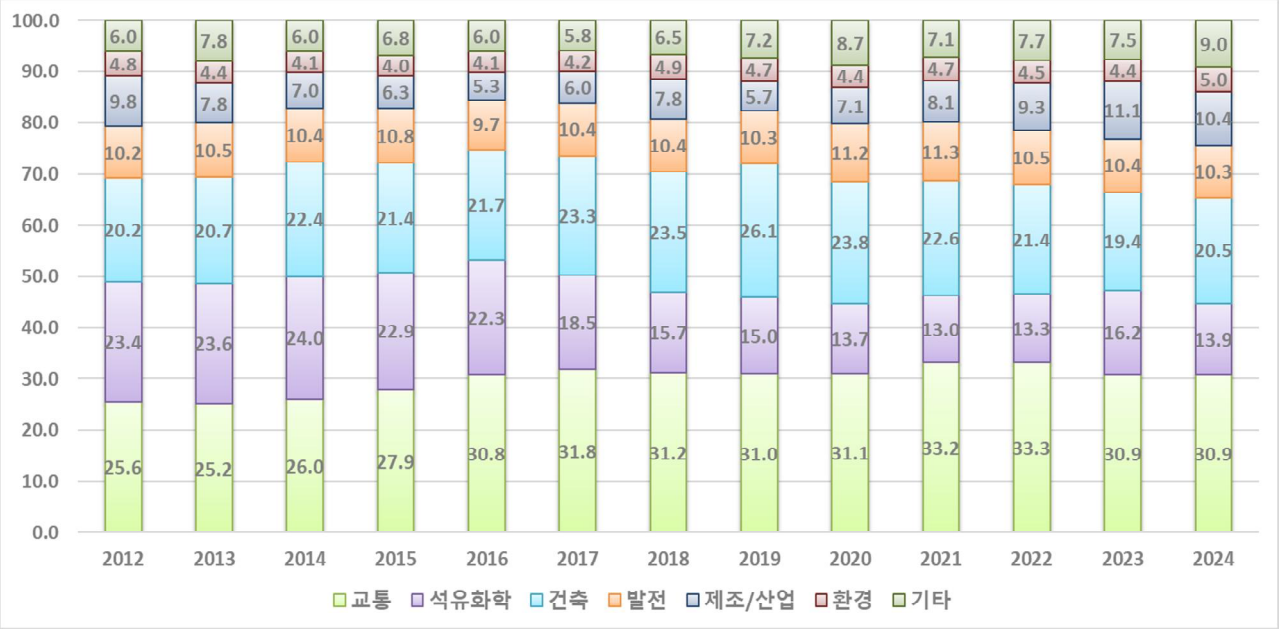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2023년에 1,308억 달러로 2022년 대비 1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했던 유럽 지역은 1,2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함.

- 2023년 1,203억 달러로 유럽에 이어 2위의 해외 매출을 기록했던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함.
- 2022년 499억 달러로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8.8% 늘어난 643억 달러로 전체 해외 매출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했던 중동 지역의 2024년 해외 매출은 756억 달러로 17.6% 증가함. 중동 지역의 해외 매출 규모가 700억 달러 대를 기록한 것은 2019년(714억 달러) 이후 5년 만임.
- 미국 지역은 766억 달러로 2023년(715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700억 달러대를 유지하며 성장세를 유지함. 반면, 2023년에 241억 달러를 기록했던 캐나다 지역은 223억 달러로 7.4%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됨.

◉ 국가별 점유율 순위는 중국(25.4%), 프랑스(16.3%), 스페인(13.3%), 미국(6.5%), 한국(6.3%), 일본(4.8%), 이탈리아(4.6%), 튀르키예(4.1%) 순임.

- 우리나라는 12개 기업이 순위에 포함되며 총 317억 달러의 해외 매출로 전년과 동일한 5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7.3% 감소함.

〈그림 4〉 지역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

주요 지역의 성장세와 주력 상품의 위축… 기회와 위협 요인 혼재된 해외건설시장 환경 대응 필요

◉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UAE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중동 지역의 해외 매출은 대폭 증가하며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지만, 석유·가스 비중은 감소세는 확연해지고 있는 상황임.

- 교통 인프라 부문은 철도, 공항, 도로 확장 등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부문의 발주 시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됨.
- ENR 250대 주요 기업은 지속가능성, 모듈러 기술, AI 및 BIM 기반의 스마트 건설 확산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시장 다각화와 공종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슈로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의 수립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